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79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057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최충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박병주, 채희철

변론 종결 2021. 10. 28.

판결 선고 2021. 11. 1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 52778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9. 2. 9.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E생)에게 제1항 기재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48681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안전장구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0322호로 원고가 C에게 2017. 2. 28.부터 2019. 11. 21.까지 납품한

건설·개인안전용품 대금 262,401,1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3. 'C은 원고에게 262,40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다. C은 2014. 1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8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된 2014. 11.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라. C은 채권자인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2019. 12. 9.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12. 10.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8681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G공제조합,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적극재산 1.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액 합계 1,832,052,572원 상당의 적극재산¹⁾과 별지 적극재산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7,933,319원 상당의 예금(잔액이 500,000원 미만인 것은 제외)²⁾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별지 소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3,556,282,693원 상당의 가압류 채무, 조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이 약 3,500,000,000원에 이르러 적극재산 합계액 약 1,900,000,000원을 현저히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C에게 이 사건 전세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성우

별지

1) 피고는, 별지 적극재산 목록 중 순번 제5, 6항의 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2018. 1.경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일은 2019. 12.경이므로 그 사이의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의 2019. 12.경의 시가가 2018. 1.경 당시의 취득가액으로서 별지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된 금액(270,000,000원, 60,000,000원)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개별공시지가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적극재산 가액의 증가액은 약 30,000,000원 내외일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정도의 적극재산 가액의 변동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

2) 피고는 2021. 11. 15.자 참고서면(2)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및 그 직후인 ① 2019. 12. 9.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잔액 99,000,000원, ② 2019. 12. 10.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된 97,781,880원 등이 C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항 기재 99,000,000원 중 97,781,880원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2019. 12. 10. 09:00:01경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된 후(따라서 위 ①, ②항 기재 각 금원은 사실상 같은 금원이다), 1분 남짓 되는 시간(09:00:22부터 09:01:15까지)동안 제3자인 I 외 40인에게 대부분 이체되었으므로(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97쪽, 전자기록 쪽수 기준), 위 ①, ②항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C의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위 참고서면(2)는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중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C의 금융거래내역을 편집하여 첨부한 후, 이를 기초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설령 이와 달리 위 ①항 기재 99,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별지 소극재산 목록에 기재된 합계 3,556,282,693원 상당의 소극재산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제3자에게 이체된 금액 상당의 채무로서 약 97,0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①항 기재 잔액 99,000,000원을 C의 적극재산으로 추가할지 여부는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